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합병·분할 후 회사에 대한 시정조치 사유 승계〉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18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28인
2. 제 안 일 : 2024. 7. 17.
3. 회 부 일 : 2024. 7. 18.

II. 제안이유

‘시정조치’는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게 그 위반 사실의 시정 또는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과 조치 경과에 따라 법 위반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거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사가 시정조치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 신설회사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할 후 회사에 대하여도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승계 규정을 마련해놓은 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징금에 대하여만 승계 규정이 있고 시정조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분할 또는 합병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회피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법 취지에 반하고 위법행위의 승계가 가능하도록 한 현행법상 과징금 규정과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승계 규정 미비를 이유로 들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분할 후 신설회사에게 시정조치 명령을 한 행위가 유효하지 않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두55159 판결).

이에 위법 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을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승계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안 제25조).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법 위반 회사가 ‘합병’·‘분할’·‘파산 후 설립’되는 등의 경우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시정조치)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5조(시정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⑤ <u>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해당 회사의 분할일 또는 분할</u>
<u><신설></u>	

현행	개정안
<u><신설></u>	<u>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u>1. 분할되는 회사</u> <u>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u> <u>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u> <u>⑥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u>

□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7조¹⁾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관한 시정조치에 있어 남용행위를 한 회사가 합병·분할·파산 후 설립되는 경우라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사유의 승계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4조(기업결합제한 위반 관련), 제37조(지주회사 행위 제한 및 기업집단 규제 위반 등 관련), 제42조(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제49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관련), 제52조(사업자단체 의무 위반 관련)의 시정조치 규정에서도 제7조를 준용²⁾하면서, 시정조

1)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조치 등)

④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37조(시정조치 등)

③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 각 호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42조(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49조(시정조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로 본다.

제52조(시정조치)

②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새로운 회사의 설립 등에 따른 제1항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사업자단체”로 본다.

치 전반에 대해 조치사유 승계 규정을 도입하고 있음.

□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 제102조³⁾는 회사가 합병·분할·파산 후 설립되는 경우라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하도급법」”) 제25조의3제4항⁴⁾은 「공정거래법」 제102조를 준용하여 제재사유가 승계될 수 있도록 정함.

□ 그러나 현행 「하도급법」은 ‘시정조치’ 사유 승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공정거래법」에 대한 준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바, 최근 법원은 현행 「하도급법」이 과징금 부과처분과는 달리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 분할 전 위법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과징금 부과)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8조, 제38조, 제43조,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위반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25조의3(과징금) ④ 제1항의 과징금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에 시정명령이 불가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⁵⁾

-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위법행위를 한 회사가 분할 또는 합병하는 경우에도 공정위가 신설회사에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시정조치 사유의 승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공정위의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 분할 등을 악용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써, 합병·분할 등으로 인한 회사 변경 시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속 이어갈 필요성은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규율 분야에서도 존재한다는 점, 제재 수단 중 과징금에 대해서는 이미 제재사유 승계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개정안의 입법필요성이 인정됨.
- 한편, 「공정거래법」 제130조제4항은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동법 제102조제2항부터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제재사유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위법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두55159 판결

현행 공정거래법은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하도급법은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신설 회사에 제재사유를 승계시키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이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제재사유를 승계시킬 수 있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사안, 즉 회사분할 전 법 위반행위에 관하여 신설회사에 시정조치의 제재사유가 승계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이를 소극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의 부과·제재처분의 회피가능성 차단 등을 위한 제재사유 승계 규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하도급법」 제30조의2⁶⁾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도 제재사유 승계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시 과징금, 시정조치 등 제재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하도급법」에 이미 과징금에 대해서는 승계규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시정조치에 대해서도 승계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09

- 6) 제30조의2(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1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요 내용을 누락 또는 거짓으로 공시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 ②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 2억원 이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제2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 그 원사업자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조의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한 원사업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사업자
 2. 제3조의5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업자
- ⑥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⑦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